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87호
- 나. 발 의 자 : 이효원 의원(찬성자 31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에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나.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예술강사를 명시함(안 제11조제3항).
- 다.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,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각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###### (1)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(안 제6조제2항)

- 개정안은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음.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상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함.

## (2) 성별영향평가 실시(안 제6조제3항)

- 안 제6조제3항은 시장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규정을 신설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2012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9년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를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매년 선정해 해당 실·국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」를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은 총 8개인데, 이 중 최근 5년간 2개 사업만 평가가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한바, 동 조례 개정으로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추가되어 제도의 취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.

### <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에 따른 문화본부 사업 현황 > 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사업명	예산	성별영향평가 여부
1	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	200	2021년 실시
2	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	200	2021년 실시
3	초·중·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	3,328	미실시
4	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	1,200	
5	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	781	
6	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	2,067	
7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	164	
8	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	278	
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(제5조제1항제2호<sup>1)</sup>)에서 ‘3년 이상 주기로 하는 수립 계획’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실시되지 않아 왔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됨.

### (3) 학교예술강사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명시된 초·중·고등학교 등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에 문화예술인 외에도 학교예술강사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.
-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1월 18일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<sup>2)</sup>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<sup>3)</sup>에

#### 1)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

제5조(성별영향평가의 대상) ① 시장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"대상 정책"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

#### 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
#### 2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제15조의2(학교예술강사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예술강사”라 한다)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 3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명시된 학교에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서울시 문화본부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」에 따른 8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‘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<sup>4)</sup>’ 사업으로 해당 강사들의 법적인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개정안은 서울시의 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야를 기존 국악뿐 아니라 다양하게 확대·발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# (4) 사무위탁 근거 마련(안 제14조)

-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(제10조), 학교문화예술교육(제11조), 사회문화예술교육(제12조)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.
- 문화본부는 현재 총 5개 사업을 서울문화재단과 민간 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 이에 대한 근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<sup>5)</sup>에

---

4)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·시비(781백만원)를 통해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 420개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국악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.

5)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

따라 위탁하고 있는바, 조례상 위탁 근거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취지로 이해됨.

<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에 따른 위탁 사업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사업명	예산	수탁업체명
1	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	200	서울문화재단
2	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	2,067	
3	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	164	
4	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	278	
5	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	1,200	한양, 건국, 숙명대학교

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의안번호  
487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	이효원 의원	2022.1.10.
주요내용	<p><b>&lt;개정 필요성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을 실현</li> <li>○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활동 활성화</li> <li>○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위탁 근거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</li> </ul> <p><b>&lt;주요 입법 요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</li> <li>○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시 학교예술강사를 지원대상에 명시</li> <li>○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시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</li> </ul>		
추진경과	○ '23.2. 관련 부서 의견 조회(양성평등담당관)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해당없음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
향후계획	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임종배(☎2133-2564)
		담당	김상철(☎2133-2566)